

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증

자동차등록번호 : _____

영치일시 : 201 년 월 일 시 분

담당부서 :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(영치운영팀)
본관 1층 107호

연락처 : 032-440-5770

1. 위 자동차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【자동차등록증의 회수】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【징수촉탁】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【자동차 관련과태료】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세무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.
2.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영수증과 본 영치증을 인천시청 납세협력 담당관실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(번호판교부)합니다. 단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지 않습니다.
(영치증 발부후 30일 이내 미납부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.)
3.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인 천 광 역 시 장



안 내 사 항

☞ 세금 및 과태료는 수납기관으로부터 해당관청에 통보되기까지 최대5일이 소요됨에 따라, 영치전 5일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차량은 수납확인이 안되어 번호판이 영치 될수도 있음을 알립니다.

☞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해 압류된 자동차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8 규정에 의해 교환허브된 스이음은 알립니다.